

극동건설 안전 인사이드

KUKDONG Safety Insight



극동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구성원의 안전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 | |
|----------------|----------------|
| 1. 안전경영방침 | 7. 안전감시단 |
| 2. 극동건설 경영방향 | 8. 기술안전관리 |
| 3. 안전보건관리 핵심요소 | 9. 의사소통 |
| 4. 3대 핵심 안전조치 | 10. 안전경영인증서 |
| 5. 작업허가제 | 1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 6. 작업중지권 | |



안전경영방침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을 경영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확보를 위한 무재해사업장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을 통해 ‘안전보건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경영방침을 정하여 실천한다.

Safety First 기업 안전문화 구축

안전경영을 통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준수

안전 확보 후
작업을 개시하는 원칙준수

3대 재해예방[추락, 협착, 낙하/비래]
핵심조치 이행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안전경영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각 조직 및 계층에서 법과 책임을 준수하는 안전경영목표를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이행 확인을 통해 안전경영체계가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09

극동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정 동 

KUKDONG

의 식 변 화

안전문화 구축
(Safety First)



사회적 책임
(안전경영)

중대재해
"ZERO"



원칙준수
(안전확보 후 작업)



핵심조치 이행
(추락, 협착, 낙하/비래)

행 동 변 화

성장과 내실의 경영을 통해 도약하는 극동건설

KUKDONG

극동건설 경영방향

성장
成長

양적성장

내실
內實

질적성장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을 대가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정착을 통해 책임있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극동건설이 되도록 한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극동건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임을 명심하고,
모든 임직원은 '기본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둘째, 'Detail'과 '집요함'을 갖춘 극동건설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조직.
목표의 달성은 업무에 대한 '디테일과 집요함'이 응집되어 표출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디테일과 집요함'으로 업무에 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기업' 극동건설

재해사고는 인간의 삶을 폐허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 (인력, 시설, 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지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장 내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대 핵심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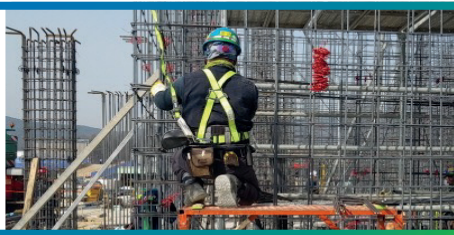
1. 추락재해예방

추락위험구간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설치



막고!!!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등)
지급/착용



차고!!!

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용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걸고!!!

2. 장비협착재해예방

건설기계 작업구간
접근방지 구획 설치
(웨빙띠, 가설휀스 등)



막고!!!

건설기계
유도원(신호수) 배치



보고!!!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협착방지봉, 경광등,
후방카메라 등)



달고!!!

3. 낙하/비래재해 예방

낙하위험 구간
접근금지 구획설치
(웨빙띠, 라바콘 등)



막고!!!

중량물 양중시
신호수 배치하여
신호 및 하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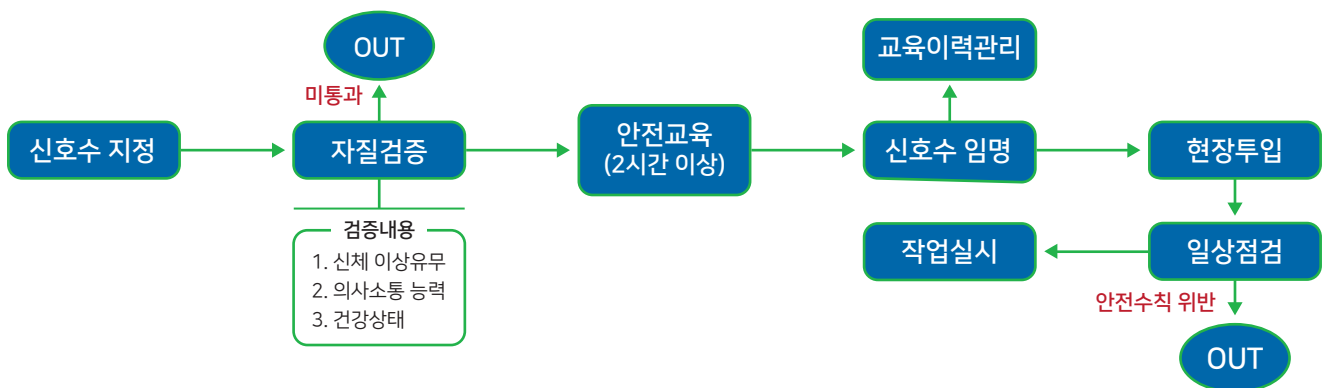
보고!!!

낙하물 위험구역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
안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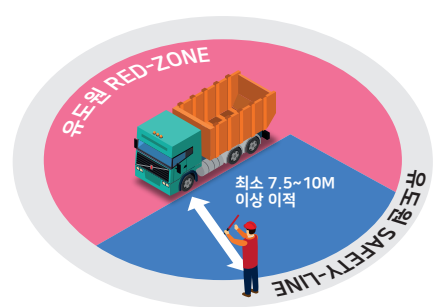
치고!!!

신호수(유도원) 배치 안전관리



신호수(유도원) 복장 및 신호위치

복 장	신호봉	전자 호루라기	신 호 위 치
	빨간조끼 (주간)	LED조끼 (야간)	
	안전모 (빨간색)	안전화	
	각반		



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작업허가제 관리

현장내 위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승인 받은 후 착수(위험요소 사전배제 목적)

위험작업 대상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
- 1.5m 이상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작업
- 밀폐공간 질식위험작업(방수공사, 터널)
- 기초파일 작업, 기중기 사용 중량물 이동작업
-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작업
- T/C 설치,인상,해체 작업
- 철골구조물 설치,인상,해체
- 승강기 설치공사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설치,연장,해체(H:4.2M이상)

작업허가 요청서 작성

작성주체 : 공사팀장

작업허가 : 현장소장 또는 사업관리단장

작성 후 게시

해당 위험작업 장소에 게시(근로자에게 주지)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에게 교육,공지

작성시기

1일 등 주기적 작성(단, 발주처별 작성지침,양식 준수)

※ 별도 지침 없을 경우 : 양식 선택하여 공사팀 작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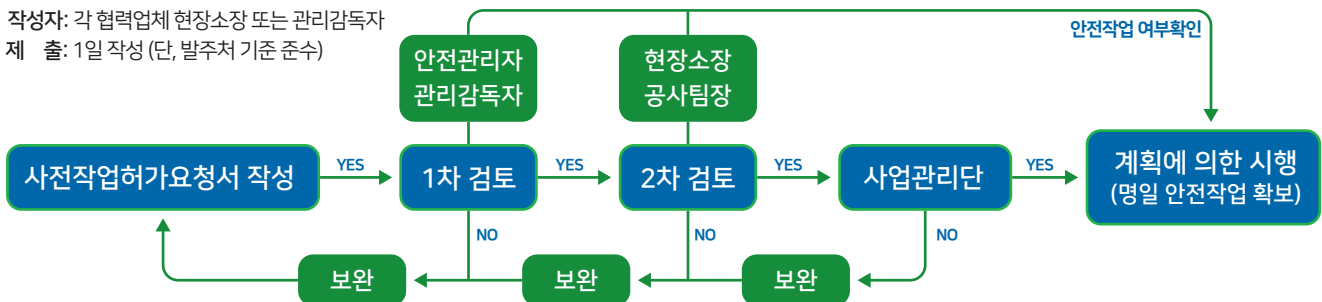
안전신포등 점검시 '작업허가제'도입여부 확인,평가 함

미시행시 '국토부 & 발주처 벌점'사항

순서도(Flow Chart)

작성자: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제 출: 1일 작성 (단, 발주처 기준 준수)



사전작업허가 요청서

KUKDONG 사전작업허가 요청서 (Permit to Work)			
1.작업허가 신청 - 작성일자 : _____			
원장명	업체명	작성자	(인)
※제출시기 : 작업착수 1일전			
2.작업계획			
허가대상 공정	공통	☐ 기초파일 작업 ☐ 흙막이 가시설 작업 ☐ 거푸집동바리	
	건축	☐ 높이2m이상 고소작업 ☐ 2m이상 외부 도장공사	
		☐ 기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3.해당공종 위험성 평가 (별지첨부 가능)			
공종명	작업내용	위험요인	관리대책
추가	공사		
검토의견	안전		
4. 작업 게시여부 결정의견			
공사팀장 (공토)		(인)	승인 ()
현장소장 (승인)		(인)	조건부 승인 ()
			부작합 ()

3대 핵심조치 이행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Check List						
□ 추락(떨어짐) 위험 작업 시작 전 점검항목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1. (제23) 사람이 추락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였는가?						
☐ 안전난대구조물 등 안전시설물설치여부 확인						
2. (제23) 사다리 또는 고소작업에 동행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가?						
☐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3. (제23) 안전시설설치가 불가할시 대체의 조치를 하였는가?						
☐ 안전벨트 착용 여부 확인						
4.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전확인 사항을 확인 하였는가?						
☐ 안전교육 ☐ 관리자 배치 ☐ 사전확인						
□ 협착(가압) 위험 작업 시작 전 점검항목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1. (제23) 작업구간 출입통제를 위한 작업구역을 구분(예:바리케이트)에 놓았는가?						
2. (제23) 작업지휘 통솔자 및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가?						
3. (제23) 장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선단 ☐ 방호막 ☐ 후방카메라 ☐ 기타 ()						
4.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확인 사항을 확인 하였는가?						
☐ 작업계획서 ☐ 통솔자/신호수 ☐ 방호막 ☐ 기타 ()						
□ 낙하(비계/물체에 맞음) 위험 작업 시작 전 점검항목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1. (제23) 작업구간 출입통제를 위한 작업구역을 구분(예:바리케이트)에 놓았는가?						
2. (제23) 작업지휘 통솔자 및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가?						
3. (제23) 낙하물을 방지하고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선단 ☐ 낙하물 방지망 ☐ 기타 ()						
4.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확인 사항을 확인 하였는가?						
☐ 작업계획서 ☐ 통솔자/신호수 ☐ 방호막 ☐ 기타 ()						
점검일자 - 2022 년 _____						
점검자 - _____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국동건설 직원 성명 및 연락처 : OOO 대리 010-000-0000						

작업중지권(Work-Stop)

작업중지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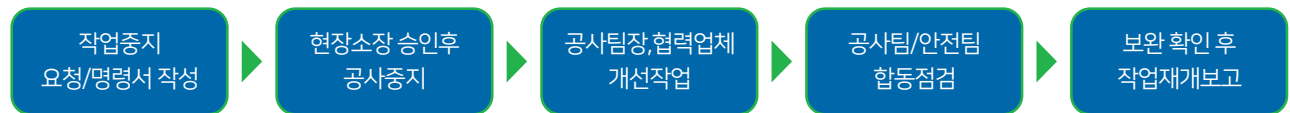
● 긴급 작업중지 대상

- | | |
|------------------------------|-------------------------------------|
| 1. 긴급한 화재,폭발 위험 예측 될 때 | 5. 개인보호구 미착용 작업시 |
| 2. 강풍,강우,강설,혹서,혹한 등 자연재해 예측시 | 6. 안전사고 발생 OR 근로자 요청시 |
| 3. 작업계획서 미제출 장비작업 | 7. 음주작업자 발생시 |
| 4. 안전기준 미준수,불량시 | 8. 그 밖에 안전보건관계자 요청시 (사업본부 소속 안전점검반) |

● 작업중지종류

일시 작업중지 : 단시간 조치 후 작업
부분 작업중지 : 해당구간 조치 후 작업
전면 작업중지 : 현장 전체 개선 후 작업

● 현장소장 작업중지 승인



● 조치확인 및 작업재개

1.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위험제거상태 / 보완사항 확인
작업중지서류 해제근거 첨부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기록관리
2. 공사팀장 작업중지 해제 후 동종사유로 인한 중지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시 원인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으로 협력업체 등 지속적 관리 필요

근로자 작업중지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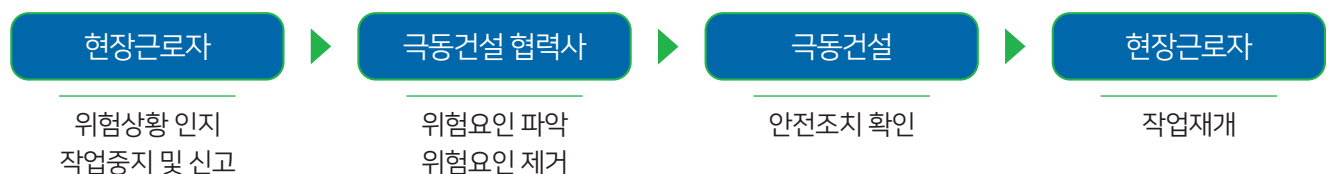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 작업중지 기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추락, 협착, 낙하/비래 등)
작업구간 내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었을 때
작업구간 내 상하 동시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구역이 장비작업 구역과 겹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보호구 미지급 또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지시를 받은 경우

작업중지 업무절차



안전감시단

운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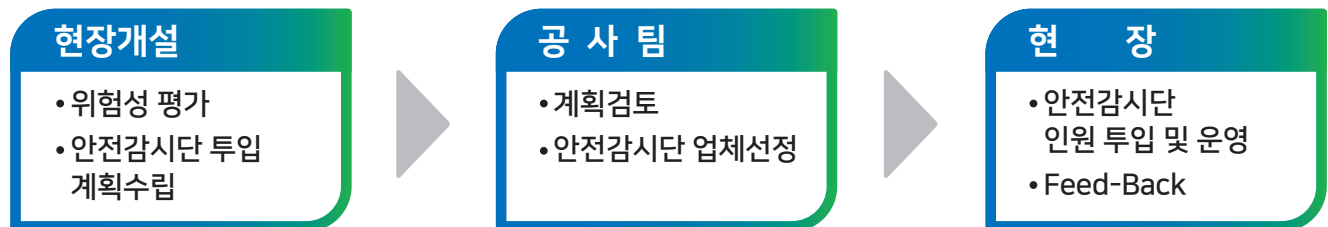
- 고위험 작업 상주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관리
- 건설 장비 반입, 일상점검의 지속적인 관리로 장비사고 예방
- 위험지적 후 조치완료까지 추적관리 강화를 통한 실질적 관리

현장 활동

- 공정별 위험 작업 Point 파악
- 현장 내 장비 관리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 근로자 작업상태 밀착 관리
- 현장 내 안전 시설물 설치상태 및 관리상태 점검
- 현장 내 불안정한 요소 지적 및 조치/확인
- 현장 정리정돈 상태 점검
- 근로자 수시 안전교육

투입 과정

- 현장 특성 및 위험성에 적합한 인원 투입 → 기존 안전시스템에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감시



기술안전관리

안전전문가 기술안전 컨설팅

- 외부 안전전문가/건설장비전문가 컨설팅 지속시행

안전건설장비전문가 장비안전점검 지속시행으로 중대재해예방

- 건설기계(월대) 3대이상(그 외 장비점검 필요현장) 매월 전문가 점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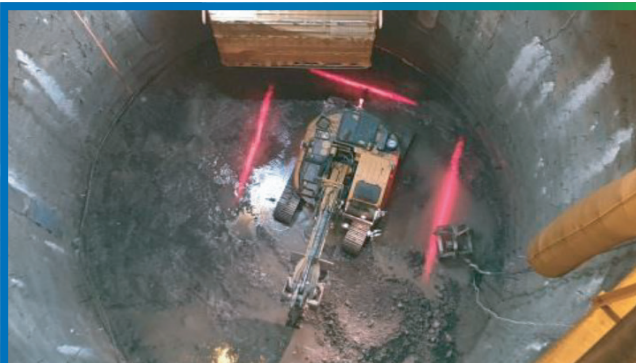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장비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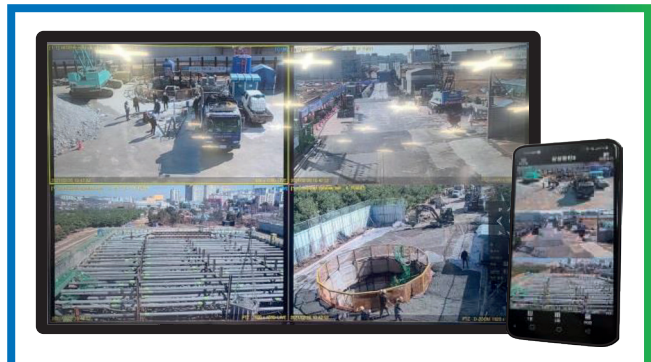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장비(건설)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5. 고소작업대

스마트 산업기술 활용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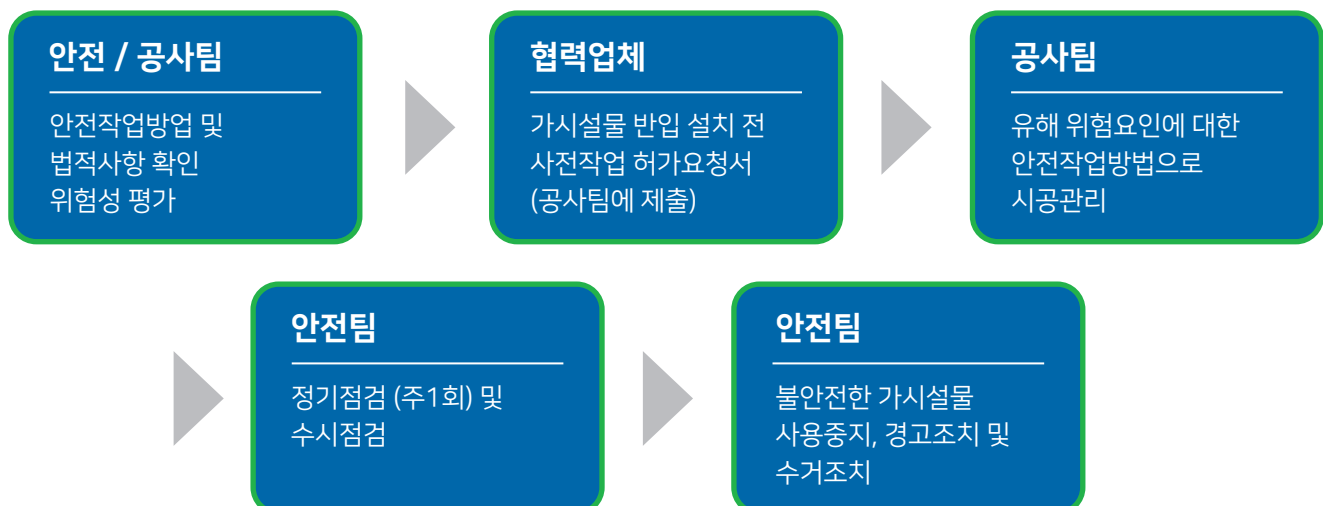
접근방지 LED라인



지능형 CCTV (핸드폰 연동)

현장 시스템안전 (P→D→C→A)

- 지속적인 현장기술안전 교육활용



의사소통

-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안전 사고재해를 수시로 인식하여 예방한다.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3·3·3 안전운동

오후 3시 현장 근로자는 작업을 멈추고 본인, 동료의 안전장구 및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시공담당자는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매일 오후 3시



3가지 점검 [나, 동료, 주변]



3가지 행복 [나, 가족, 회사]

4·4·4 예방운동

매월 4일 개인보호구 중점점검 및 특별안전교육, 14일 안전설비 중점점검, 24일 건설장비 중점점검을 작업 전에 시행한다.



매월 14일 [개인보호구 중점점검]



매월 14일 [안전설비 중점점검]



매월 24일 [건설장비 중점점검]

현장 기본 안전수칙 준수

①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 선정 / 자발적 안전관리

- 안전 우수업체 활동을 장려하고,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 안전 우수업체 적극 발굴 및 우수 안전관리수칙 준수자를 선발하여 포상

②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 각 공종별 안전점검 CHECK-LIST 점검 후 이상 사항은 위험성평가 협의회시 소통

③ 맞춤형 안전컨설팅 시행으로 안전관리 수준향상

- 외부 자율안전 및 건설장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속 시행

④ 전담신호수, 화재감시자 숙련공 배치

- 작업 지킴이 및 굴삭기 등 상주장비 의사소통이 원활한 숙련자 배치

⑤ 작업허가제 시행

- 현장별 PTW(Permit to Work) 시행
 - 작업 1일전 작성
 - 현장소장 등 책임자 허가 후 작업투입
 - 위험성 평가시행
 - 전 현장 시행토록 함

안전경영인증서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3자가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 인증서



인증서번호 : KOHS-0217

KAB-OC-06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극동건설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401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위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기술된 인증표준과 범위에 적합함을 인증함.

인증표준

KS Q ISO 45001 : 2018 / ISO 45001 : 2018

인증범위

국내외 토목, 건축, 주택,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및 플랜트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엔지니어링, 공정관리, 설계, 구매, 시공, 제작설치 및 서비스

최초인증일자 : 2016년 10월 13일 인증유효기간 : 2019년 11월 16일 ~ 2022년 11월 15일

- * 본 인증서는 위 조직이 인증유지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인증효력의 유효성은 웹사이트 www.kpcq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자 : 2019년 10월 28일

심영녕

심사팀장

정위식

원장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F
www.kpcqa.or.kr / Tel.02-738-900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한국인증지원센터(KAB)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 : KAB-OC-06) 받았습니니다.



CAT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Co., Ltd.

an, 48434, Korea

urance certifies that
ystems of the above organization
be in accordance
ealth and safety standards
ailed below.

45001 : 2018

on
ontrol, design, supervision, purchase,
ivil, architecture, housing, machinery,
rchitecture and plant work for domestic
ect

November 16, 2019 ~ November 15, 2022

- *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if the organization meets the requirement continually
- * Certification Validity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kpcqa.or.kr

Date of Issue : October 28, 2019

심영녕

Sung-Nyoung, Im
Lead Auditor

정위식

Eui-Sik, Jeong
CEO

kpc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12F, Floor KCCI building, 39, Sejong-daero, Jung-gu, Seoul, Korea
www.kpcqa.or.kr / Tel.82-2-738-9001

The use of Accreditation Mark KAB indicates Accreditation in respect of those activities covered by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Number KAB-OC-06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내용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3년의 적용유예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 :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대재해의 정의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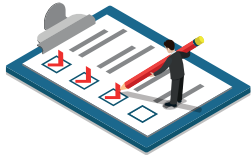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 및 주요내용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벌내용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극동건설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안전한 현장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UKDONG



KUKDONG